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07
----------	------

발의년월일 : 2020년 02월 05일

발 의 자 : 장상기, 홍성룡, 강동길,
임종국, 우형찬, 한기영,
황인구, 김태호, 이광성,
김제리, 김화숙, 박상구,
전병주, 여 명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나, 건폐율 및 높이, 조경면적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제약과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구 해제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건폐율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 서울시는 현재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은 3층 12m, 건폐율 30% 이하의 건축물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과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2항 본문 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단서 조항 중 “40퍼센트”를 “50퍼센트”로 개정한다. (안 제39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본문 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단서 조항 중 “4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p> <p>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③ ~ ⑦ (생략)</p>	<p>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40퍼센트</u>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u>50퍼센트</u> 이하로 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